

장학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 학칙 제68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1>

제 2 조 (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 (사무관장)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처장이 관장하고 장학생 선발 및 기타 제반 사항은 교학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0.6.3>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 4 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장학금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교학처장, 기획장, 행정지원처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6.3>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당연직으로 장학담당자로 보한다.

제 5 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장학의 기본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장학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③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결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장학생의 지도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회의) ① 회의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

제 7 조 (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내부장학금과 외부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종류) ① 내부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외부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사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장학금 신청

제 9 조 (신청자격) 본 대학 학생으로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 품행이 방정한자 중에서 별첨 1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청방법) ① 장학금의 지급 신청은 매 학기별로 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1. 장학금 신청서
2. 학과장 추천서
3. 성적증명서
4. 재학증명서
5. 보훈대상자 증명서
6. 기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개정 08.1.1>

제 11 조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학기 기간 중 재학 중이 아닌 자
2. 징계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기타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4.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미등록휴학, 재입학, 복학, 편입, 전과 후 한 학기가 지나지

아니 한 자

5. 시험 부정행위로 처벌된 자
6. 기타 학칙위반으로 처벌된 자

제 5 장 장학생 추천

제 12 조 (추천 과정) 각 학과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학과회의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하여 학생지원처에 통보하고 학생지원처는 이를 심의한다. 단, 해당 학과에서 심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학생지원처에 추천하여 심의토록 한다.

제 13 조 (추천기준) 학과회의는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는 한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1. 학업성적
2. 가정형편
3. 장학생수의 학년간 균형 유지
4. 학적 변동 사항
5. 제11조(신청자격제한)
6. 제16조(이중추천 금지)

제 14 조 (동점자 처리기준) 성적장학금 추천자 중 동점자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를 적용하여 추천한다.

1. 취득(신청)학점수가 많은 자
2. 전공과목의 취득(신청)학점이 많은 자
3. 직전학기 평균평점 우수자
4. 연소자
5. 입학년도가 빠른 자

제 15 조 (교체추천)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받은 학생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과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 추천 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11조(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3. 삭제<08.1.1>
4. 기타 본 규정에 위반하여 선발된 경우

제 16 조 (이중추천금지) 모든 장학금은 동일인에게 이중수혜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학비감면은 예외로 한다.

제 17 조 (외부장학생 추천) 교외 장학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

1. 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의뢰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의 명의로 추천한다.
2.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3. 교외장학금을 학교를 통하여 지급할 때에는 학교에 입금 후 전달한다.
4. 해당 학과 및 인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과별 균형을 참작하여 교학처장이 선정하여 배정하고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 명의로 추천한다.<개정 2010.6.3>

제 6 장 장학금 지급

제 18 조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감면금액을 명시하여 잔액을 납입하게 한다.

제 19 조 (현금지급 금지)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 (장학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1. 장학생으로 확정된 학생이 이미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
2. 등록기간 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제 21 조 (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비 감면 및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학비감면을 받거나 수령한 장학금은 회수한다.

1. 본 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
2. 장학금의 신청절차 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3. 장학금 지급 대상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개정 08.1.1>

4. 이중수혜자로 확인 된 경우<개정 08.1.1>

제 22 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체육특기장학금

제 23 조 (체육특기장학금)

- ① 본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대학의 위상정립과 홍보활동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개정 08.1.1>
- ② 장학위원회 결의에 의거 장학금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③ 삭제<08.1.1>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학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조 (폐지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사용하던 “장학금 지급 규정”과 동 규정 시행세칙을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장학금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만학도장학금, 군인자녀장학금, 지역인재육성장학금, 고등학교추천장학금, 간호과우수인재장학금, 외국어우수인재장학금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장학금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 내부장학금(종류/지급기준)<개정 09.07.23, 2010.6.3>

구분		등급	지급기준 (수혜자격)	장학금	비고(세부기준)	
성적우수장학생	신입생	전체수석	A급	◎ 대학 입학 시 전체 수석에게 지급	전액	재학 중 평점4.00이상 시 계속 지급함.
		전체차석	B급	◎ 대학 입학 시 전체 차석에게 지급	80%	
		학과수석	C급	◎ 대학 입학 시 학과수석에게 지급	50%	
	재학생	1등	A급	◎ 학과편제정원 1%선발	100만원	* 학과별 편제 정원1 0%범위 내 등급별 차등 지급(※소수점:절상) * 성적(2~3등)장학금지급기준 학과별 직전학기 재학생 30명 이상시 지급 * 시간제 등록생 제외
		2등	B급	◎ 학과편제정원 2%선발	50만원	
		3등	C급	◎ 학과편제정원 7%선발	30만원	
만학도장학금			입학일 기준 만35세 이상자	80만원		
군인자녀장학금		A급	10년이상 근속자녀로서 부사관에 입학할 경우	수업료 50%	평점 3.5이상 유지	
		B급	10년이상 근속자녀	수업료 30%	평점 3.5이상 유지	
지역인재 육성장학금			당해년도 졸업자 중 태백, 정선, 영월, 삼척 소재 고등학교졸업자 중 전 학년 내신 3등급 이상인자로 고등학교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명 단, 간호과는 제외	50만원	평점 3.5이상 유지	
고등학교장추천장학금			최근 3년간 등록률 상위 20개교 선정, 당해학년도 졸업자 중 고등학교별 1인, 전 학년 내신 3등급이상자를 각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단, 간호와 지원자는 제외	50만원	평점 3.5이상 유지	
간호와우수인재 장학금		A급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이상인자 단, 입학정원의 10%	수업료 전액	평점 3.5이상 유지	
		B급	전 학년 내신 2등급 이상인자	50만원	평점 3.5이상 유지	
외국어 우수인재장학금			TOEIC : 600점, JPT : 600점, JLPT: 2급, HSK: 3급 중 택 1 이상인 자	50만원	입학당시에 한하여 지급	
체육특기장학금		A급	◎ 입상경력 기준 선발, 재적인원의 10%	전액	<표1> 참조	
		B급	◎ 입상경력 기준 선발, 재적인원의 5%	80%		
		C급	◎ 입상경력 기준 선발, 재적인원의 5%	50%		
산업체위탁 장학금		A급	◎ 교외 산업체 및 군 위탁 교육생	30%	위탁 교육 체결 시 약정한 장학금 임.	
		B급	◎ 교내 산업체 위탁 교육생	20%		
산업체위탁 격려장학금			◎ 위탁 교육 체결 시 약정한 장학금 임			

구분	등급	지급기준 (수혜자격)	장학금	비고(세부기준)
격려장학금	A급	● 총학생회장, 대의원의장	전액	단, 해당임기가 끝나지 않아 자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시 반환, 미 지급함.
	B급	● 총학생회부회장	80%	
	C급	● 대의원 부의장, 총학생회 각 부장	100만원	
	D급	● 총학생회 차장, 각과 학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대위원의원포함	50만원	
	E급	● 각 학과 과대표	30만원	
기숙사사생장학금	A급	● 기숙사 사생장(남.여)	기숙사 비전액	기숙사 장학금 별도 집행
	B급	● 기숙사 남녀 각 총장(남.여)	기숙사 비50%	
국가유공자 장학금	A급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전액	평균 점수 70점이상
	B급		50%	
공로장학금	A급	품행이방정, 성실, 타의모범, 학교발전에 기여 사회봉사활동의 기여도 및 역할	50만원	대학 / 학과추천자 중 선발
	B급		30만원	
	C급		20만원	
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대상)본인 및 자녀 진폐환자 본인 및 자녀 장애인(4급이상)판정자 본인 및 자녀
기타장학금		총장의 추천에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총장이 부의하는 자
근로장학금	A급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별도책 정	국가근로장학제도에 의하여 선발, 시행
	B급	교내(학과)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50만원	경제적 곤란 자 추천
교직원 복지장학금	A급	교직원 본인, 자녀, 배우자(입학금 면제)	수업료 전액	
	B급	교직원 형제, 자매, 배우자직계포함(입학금 50% 면제)	수업료 50%	
FAMILY(가족)장학금		학생 본인 및 배우자 직계를 포함하여 2명 이상 동시에 입학 및 재학 중인 자	30만원	해당자중 1명지급
재입학 장학금	A급	우리대학졸업자로 정규 / 정원 외(재)입학한 자	100만원	
	B급	타 대학졸업자로 정규 / 정원 외(재)입학한자	30만원	

< 표1 > 체육특기자 장학생의 입상경력기준

구 분	입상실적에 따른 선정기준	비 고
A급 장학금	1. 전국대회 개인 3위 이내 입상자 2. 전국대회 단체전 1위 입상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B급 장학금	1. 전국대회 개인 5위이내 입상자 2. 전국대회 단체전 2위 입상자	
C급 장학금	1. 전국대회 개인 7위이내 입상자 2. 전국대회 단체전 3위 입상자	